

『구미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·김민성 의원

2. 찬 성 자 : 김낙관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,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의장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홍보 사업 및 내용 (안 제4조~제11조)
- 자료의 관리 (안 제12조)
- 홍보 업무의 위탁 및 용역 (안 제13조)
- 개인정보 보호 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◆ 의정활동 및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◆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의정 참여 확대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.
- ◆ 특히, 의회누리집, 소셜미디어,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- ◆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, 체계적인 홍보 근거 마련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.
- ◆ 아울러, SNS 전담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우리 의회의 활동상이 많이 홍보될 것으로 기대됨.
- ◆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의정 홍보의 체계적 추진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